『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고광민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대지 내에 조성된 공공보행로 사용을 놓고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대지 내에 조성된 공공보행로의 유지·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